

제263호 (2010. 6. 14)

■ 건설 경기

- 5월 CBSI 3개월 연속 하락, 15개월 내 최저

■ 정책·경영

- 공공관리제도-주민 및 조합 지원 역할에 중점 두어야
- 건설업 구조조정의 파급 효과와 정책 과제 모색

■ 정보 마당

-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교량 유지관리 현황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발주자 자재 직접구매의 '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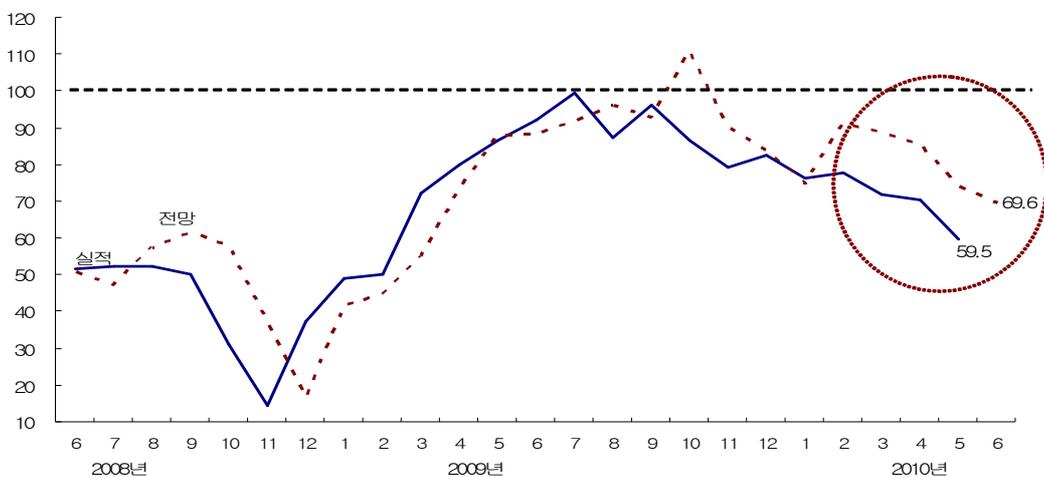
5월 CBSI 3개월 연속 하락, 15개월 내 최저

- 전고점인 작년 7월 이후 하락국면 지속, 작년 SOC 예산 증액 효과 거의 소진 -

■ 전월 대비 11.0p 하락...전고점인 작년 7월 이후 39.8p 하락

- 5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 대비 11.0p 하락한 59.5를 기록해 3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지수가 작년 2월 이후 15개월내 최저치를 기록했음.
 - CBSI는 작년 7월 정부 SOC 예산 급증 및 조기 집행의 영향으로 6년 7개월내 최고치인 99.3을 기록한 이후 이 달까지 소폭 등락을 반복하면서 10개월 동안 하락 국면을 지속하고 있음. 작년 7월 이후 올 5월까지 지수 하락폭은 39.8p나 됨.
- 5월 지수 59.5는 작년 2월(50.0 기록) 이후 15개월내 가장 낮은 수치로서 작년 정부의 SOC 예산 증가로 인한 지수 상승 효과가 거의 사라진 것으로 판단됨.
 - 통상 3월 이후에는 겨울철 건설 비수기가 끝남에 따라 지수가 계속해 상승하는 시기이나 올해는 3월 이후 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어 건설기업의 체감경기가 그만큼 나쁘다는 것을 나타냄.
 - 이는 1~4월 국내 공공부문 건설수주가 전년 동기비 37.3% 감소(국내 총 건설수주는 9.2% 감소)해 작년 대비 재정효과가 많이 사라진 가운데 최근 민간주택의 신규 분양 침체, 준공후 미분양 및 미입주 증가로 인한 주택업계 유동성 위기 지속 등 민간 건설경기 부진이 더해져 나타난 결과로 해석됨.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추이〉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업체 규모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부진, 지방업체지수는 3개월만에 50선 이하

- 업체 규모별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전월에 이미 매우 부진한 수준을 보인 중견업체 지수가 전월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 가운데, 5월 들어서는 대형 및 중소기업마저 작년 초 수준으로 지수가 하락함으로써 업체 규모와 관계 없이 전반적으로 지수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지난 4월 전월 대비 7.4p 하락한 63.0을 기록해 2개월 연속 하락하며 작년 3월(66.7) 이후 최저치를 보임과 동시에 1년 2개월만에 중소기업보다 부진한 현상을 재현했던 중견업체지수는 5월에는 그 동안의 지수 하락에 대한 부담으로 전월과 동일한 63.0을 기록함.
 - 반면, 지난 3월 78.6을 기록해 80선이 무너졌으나, 4월에 소폭 기술적 반등을 보이며 80선을 회복했던 대형업체지수는 5월 들어서 결국 15.7p가 하락한 64.3을 기록해 작년 2월(58.3)에 근접한 수치를 보임.
 - 중소기업지수 역시 지난 2월 이후 3개월 동안 연속 상승하며 통상 계절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상승 패턴을 보였지만, 5월 들어서는 전월 대비 17.9p나 하락한 50.0을 기록해 작년 1월(50.0) 이후 16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함.
- 지역별로는 서울 업체가 전월 대비 11.1p 감소한 63.5를 기록, 지방 업체는 10.5p 감소한 53.9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지방업체지수는 전월 대비 10.5p 감소한 53.9를 기록함으로써 지난 2월 59.6을 기록한 이후 3달만에 다시 지수가 50선으로 떨어져 지방 건설 경기는 더욱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음.

■ 6월에도 공공 수주 부진 및 주택업체 위기설 등으로 저조할 전망

- 6월 전망치는 69.6을 기록해 5월 보다는 침체 수준이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70선에 미치지 못해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전망됨.
 - 공공 수주가 계속해 작년에 비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일부 주택건설업체의 위기도 단기간 내 해결되기 어려운 가운데 채권단의 건설사 신용위험평가가 계속 진행 중이어서 건설기업의 체감경기는 당분간 저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

이홍일(연구위원·hilee@cerik.re.kr)

공공관리제도-주민 및 조합 지원 역할에 중점 두어야

- 사업비 절감·세입자 보상 미흡 등 장단점 드러나, '공공의 역할' 재고 필요 -

■ 주택정비사업 과정에서의 투명성 강화 위해 도입

- '공공관리제도'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임.
 - 주체는 시장·군수가 되거나 또는 NH공사, 신탁업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등이 공공관리를 위탁받아 맡게 됨.
- 기존 정비사업의 문제점들인 조합과 시공사간 부조리, 세입자보상과 관련한 갈등, 조합의 전문성 부족, 사업비용 조달능력 미비 등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의 개입 필요' 취지로 제도화되었음.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그 근거가 새로이 마련되었으며, 오는 7월 16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임.

■ 사업비 절감 등에 효과

- 공공관리자의 업무는 추진위 또는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업무지원, 정비업체의 선정, 설계자 및 시공사 선정방법 등에 대한 지원, 기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음.
 - 정비사업에서 주민이나 조합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시공사의 선정과 관련, 시공사 선정시 계약 내용에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함.
 - 공공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장·군수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사가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공관리에 따른 주민이나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
 - 공공관리의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의 종류와 공공관리 시행을 위한 방법·절차기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의한 공공관리비용의 지원범위, 공공관리자의 업무범위 추가 등은 시·도조례 위임사항으로 하고 있음.

■ 시공사 선정 시기 혼선, 철거·세입자 보상 등도 미흡

- 시공사 선정 시기는 조합설립 이후로 개정 「도정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서울시 조례 안에서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을 반영한 설계도서에 따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합설립 혹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여부에 대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임.
- 공공관리제도는 민간 차원에서 처리가 곤란하거나 공공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지원 기능이 주가 되어야 하나, 철거나 세입자 보상 등과 관련한 공공관리제도의 역할은 누락되어 본래적 의미가 퇴색되고 있음.
- 공공관리 비용은 원칙적으로 공공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나, 지자체마다 정비기금의 규모나 재정상태가 제각각이고 시·도지사의 지원규모도 정치성 또는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여지가 있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주민의 진정한 의사 반영이 중요, 시공사 선정 시기도 명확히 해야

- 공공관리제의 도입은 공공만능주의의 표현이 아니라 주민 또는 조합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할 수 있으면서 장기적인 도심 재생의 발전 방향과의 조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야 함.
- 시공사 선정 시기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조례개정 방향이 상위법인 개정 「도정법」 규정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현장에서 혼선이 야기되지 않게 명확한 유권해석을 하거나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정비사업에 공공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감독하는 사실상의 ‘공공개발방식’이 아닌 정비구역 주민 및 조합의 지원역할에 중점을 두어 민간에서의 처리가 힘든 철거나 이주, 세입자 보상, 사업비의 파이낸싱 원활화 등에 역량이 모아져야 함.
- 공공관리에 따른 비용 부담과 관련 ‘부익부 빈익빈’의 지역적 차별이 야기되지 않도록 지자체별 적립 후로 시행 시기를 조정하든가 도시정비기금의 지원을 사업 규모 대비 일정 비율 내지 공익적 목적의 항목인 경우로 한정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함.

두성규(연구위원·skdoo@cerik.re.kr)

건설업 구조조정의 파급 효과와 정책 과제 모색

- 파급효과를 고려한 단계적 구조조정과 산업기반 재편 및 체질개선 병행되어야 -

■ 강도 높은 구조조정 예고 속 중견 건설사들이 1순위로 거론

- 건설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팽배한 가운데 건설산업의 중추인 중견 건설사가 구조조정의 최우선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음.
 - 대형 건설사들은 사상 최대의 해외건설 실적에 힘입어 경기 침체를 극복해나가고 있음.
 - 주로 관급공사 수주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들도 4대강 사업 등 정부의 재정투자가 확대되면서 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있음.
 - 그러나, 민간 건축경기 비중이 높은 중견기업들은 해외 및 관급공사 참여기회를 갖지 못한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자 구조조정의 최우선 대상으로 부각됨.
- ※ 상위 300개 업체들은 총 건설 수주시장에서의 약 75%를 점하고 있으며 국내 민간 주택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은 88.6%에 달함.
- 최근 건설산업의 위기 요인에는 경기적 요인 외에 정책적 요인이 중첩된 효과가 큼.
 - 부동산시장에 지나치게 의존적이었던 중견 건설기업 스스로 위기를 초래한 것은 사실이나, 잦은 정책변화와 과도한 기업 채무보증을 요구한 금융기관의 대출관행 등 시장 환경이 미친 영향도 배제할 수 없음.
 - 특히 변동성이 높고 시장 조절 성격이 강한 부동산 관련 정책은 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확대시켜 산업기반을 취약하게 하고 있음.
- ※ 최근의 공급과잉은 기업의 사업 판단 오류의 책임도 있으나 2007년 분양가상한제 실시, 2010년 2월 양도세 한시감면 혜택 종료 등의 정책적 요인으로 공급 물량이 단기간에 집중되었던 영향이 큼.
- 2004년 이후 확대된 최저가낙찰제는 민간 건축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최근 기업 경영 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최근 워크아웃, 부도 등 경영상 위기를 겪은 7개사의 공공공사(기성액 기준) 중 최저가 공사의 비중이 2007년 21.9%에서 2009년 61.4%로 크게 증가하였음.

■ 건설업 구조조정, 전후방 연관 산업에 직·간접적 영향

- 시공능력 1~300위 업체들의 종업원 수는 약 12만 5,860명으로 집계되며 이 중 10%만

구조조정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약 50,344명(12,586×4인)이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됨. 간접적인 영향권 안에 포함된 협력업체 종사자 수도 약 14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시공능력 1~300위 업체들의 협력업체 수는 약 65,323개, 협력업체의 종사자수 141.7만 명으로 추산됨 (전문건설업체 1사당 평균 종사자수 21.7인 : 2008년 건설업조사보고서, 통계청).

- 또한 최근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사고 현장 수가 증가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환급사례 및 공사 중단 사례가 증가 → 하도급 및 자재 업체 등에게도 파급 예상

※ 주택 보증사고 사업장 환급 이행 현황 2007년 1,681가구 → 2008년 3,815가구 → 2009년 7,137가구

- 현 상황에서의 구조조정은 산업의 중추 격인 중견건설업체들이 주요 대상이 되고 있어 만약 이대로 구조조정이 진행된다면 중견기업군은 사라진 기형적인 산업구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큼.

※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과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위기 이후 세계 신산업질서 형성에 대응할 주역으로 중견기업을 세계적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발표(2010.3.18)한 바 있으나 건설업은 오히려 중견기업이 구조조정의 1순위가 되고 있음.

■ 체질개선 유도 등 경쟁력 강화방안 병행되어야

- 민간 건설시장의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시장의 정상화가 필요함. 시장 건전화 위해서는 구조조정과 함께 산업기반 재편 및 체질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구조조정의 전후방 파급 효과를 고려하고 중견기업들의 산업 내 역할을 감안할 때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은 단계적·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시장의 정상화가 요구되며 우선적으로 수도권에서의 적극적인 미분양 해소가 요구됨.

※ 수도권 임대사업자 자격요건을 완화(5호 이상 → 2호 이상)하고 대형 주택도 임대사업 세제혜택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시장에서 대형 미분양 아파트가 해소될 수 있는 여건 형성이 요구됨.

- 정책적으로는 주택산업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유도해야 할 것임.

-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로 정부의 공공주택기능이 크게 확대된 이 시점이야말로 민간 주택시장은 시장원리가 작동하는 경쟁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임.

※ 과거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대에 만들어진 제도들의 개선이 필요(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김현아(연구위원·hakim@cerik.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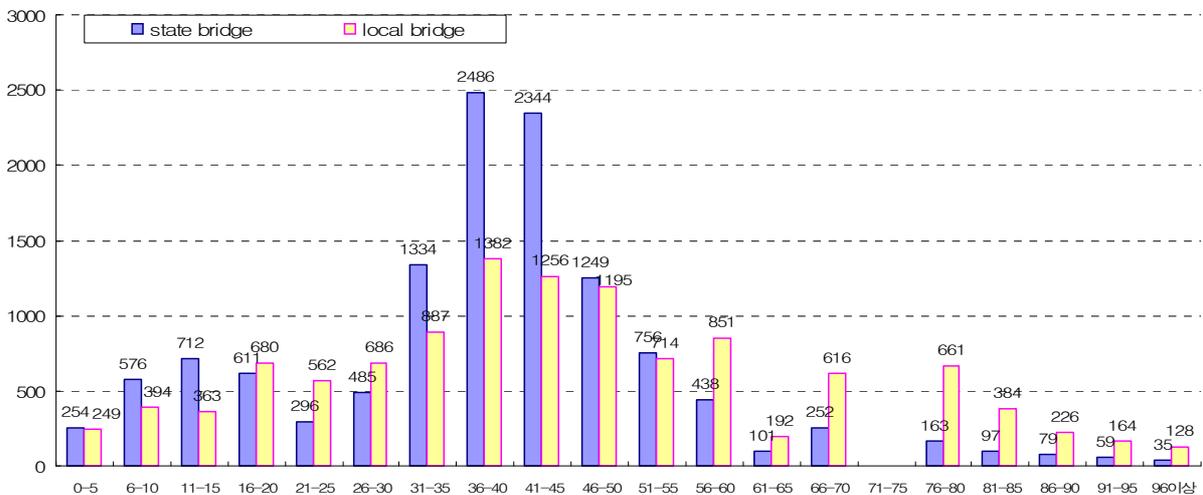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교량 유지관리 현황

- 절반 이상이 노후 교량, 소수 전문인력의 안전 점검으로 지속적인 유지관리 -

■ 36년 이상된 노후 교량이 대부분

- 미국 캘리포니아주에는 총 2만 3,917개의 교량이 있는데 준공 이후 36년 이상된 노후 교량이 대부분임.
 - 캘리포니아주에는 주정부 소유의 교량이 1만 2,327개, 지방정부 소유의 교량이 1만 1,590개로 총 2만 3,917개의 교량이 있음.
 - 준공된 지 36~40년된 교량이 가장 많으며, 특히 36년 이상된 교량은 총 1만 5,828개로 전체(2만 3,917개)교량의 66.2%를 차지함.
- 이 교량들을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주 교통성은 SM&I(Structure Maintenance & Investigations)부서를 설립,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함.
 - SM&I는 교통성 본부기관에 소속된 구조물 유지·점검 부서로서 총 184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들의 임무는 교량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 및 가공하여 보수 및 보강 공사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임.
 - 특이한 점은 주정부기관이 지방정부 교량까지 모두 점검을 실시하는 것임. 지방정부가 재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안전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임.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량 현황〉



자료 : 캘리포니아주 교통성, 2007년 말 교량 현황임.

■ 유지관리의 핵심은 소수의 전문가들이 수행하는 안전점검

- 소수의 숙련되고 전문화된 인력이 철저한 안전 점검을 수행하는 것이 유지관리의 핵심
 - 70~80명으로 구성된 교량 유지전문 기술자(ABME : Area Bridge Maintenance Engineer)들이 총 5가지로 구성된, 초기 점검, 정기 점검, 사고 점검, 정밀 점검, 특별 점검 등을 수행함.
 -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 도구를 이용하여 육안위주로 점검하는 정기점검으로, 각 시설물별로 2년 주기로 한 번씩 실시함.
 - 점검 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구조물의 결함과 보수 보강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예상비용과 상태등급 등을 결정하도록 함.
 - 시설물 소유자와 관리주체는 보고서를 통해 전문화되고 표준화된 보수보강 공사 견적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고서에 기록된 사항은 누적되어 차후 점검에 활용됨.
 - 특이한 것은 1년 동안 교량전문가 1명이 약 400~450개의 교량을 점검하는 것임.
 - 이들의 평균 경력이 12년 이상인 것을 감안 숙련 정도와 전문성을 가늠할 수 있음.

■ 우리나라도 2020년 이후 노후 교량 급증, 교량 유지관리 전문가 필요성 증대

- 우리나라도 2020년 이후에는 30년 이상 노후 교량이 크게 증가하게 되므로 캘리포니아 주와 같이 교량 유지관리 관련 전문가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1.2종 시설물을 기준으로 현재에는 20년 미만의 교량이 70~80%로 대부분을 차지함.
 - 그러나, 1990년대에 완공된 교량 수가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 2020년 이후가 되면 준공된 지 30년 이상되는 교량 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됨.

〈국내 1.2종 도로 교량 현황〉

준공 연도	사용 연수	개소	비중(%)
1960년 이전	51년 이상	27	0.5
1961~1970년	41~50년	70	1.4
1971~1980년	31~40년	227	4.5
1981~1990년	21~30년	674	13.4
1991~2000년	21~10년	2,340	46.4
2001~2004년	10년 미만	1,702	33.8

자료 :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통계연보, 2005.

박철한(연구원.igata99@cerik.re.kr)

■ 주요 정부 부처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6.9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부담금운용평가단 중간점검회의'에 건설산업연구실 강운산 연구위원 참여 - 2010년 부담금 운용 평가에 대한 중간점검 및 최종평가 관련 협의
	금융감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운용서비스국 주최 외부평가위원회 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두성규 실장 참여 - 집합투자업 인가 관련 평가대상 회사의 심사를 위한 외부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
	국토해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정책과 주최 '부동산 시장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영위원회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연구위원 참여 -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에 대한 논의 및 5월 EWS 지표에 대한 점검
	국민권익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비사업 관련 전문가 간담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두성규 실장 참여 - 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 관련 재정착률 제고 방안에 관한 전문가 자문 수행
6.11	국토해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건설공급과 주최 공동주택관리 관련 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두성규 실장 참여 - 공동주택관리 선진화 방안 관련 자문 수행

■ '2010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 개최

- 개최 목적 : 2010년 하반기 국내 및 해외 건설경기와 주택·부동산시장 전망을 통해 건설업체 및 관련 기관들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
- 일 시 : 2010. 6. 23(수) 14:00 ~ 17:00
- 장 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 주 최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후 원 : 해외건설협회

■ '민간투자사업 추진 실무과정' 개설

- 개설 목적 : 건설시장의 축소와 함께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BTO/BTL)의 활성화를 위해 개설
- 교육 일정 : 2010. 6. 22(화) ~ 25(금), 4일간 32시간
- 교육 장소 : 건설회관 9층 건설산업연구원 연수실
- 교육 대상 : 건설업체 민간투자사업 실무자, 유관기관 및 단체 등

발주자 자재 직접구매의 '환상'

중소기업청이 최근 공사용 자재를 발주자가 직접 구매해 시공자에 지급토록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공사용 자재 예산이 20% 가까이 증액됐다고 한다. 자재를 분리 입찰할 경우 최저가입찰 대신 적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면서 낙찰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발주자가 공사용 자재를 직접 구매·공급할 경우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부실공사 또는 하자 발생시 책임 구분이 어렵다는 것이다. 현행 법령에서는 발주자가 지급한 자재의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그런데 공사 완료 후 발생한 하자가 자재 자체의 하자인지, 시공상 하자인지 애매한 부분이 많다. 시공자가 요구하는 사양이나 품질로 납품하기도 어려워진다. 시공업체의 품질관리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해 분쟁이 발생하거나 적기 공급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최근에는 민간투자사업에까지 공사용자재의 분리발주를 강제하는 의원입법이 제안된 바 있다.

그런데 설계에서부터 시공을 일괄해 책임지는 턴키나 BTL 등 민간투자사업에서는 발주자가 자재를 직접 구매·공급하는 것이 극히 비현실적이다. 턴키공사는 입찰자가 설계를 수행하며 실시설계시 자재 사양이 구체화돼 금액이 확정된다. 따라서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할 중소기업청과 구매품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 또한 실시설계 이전에 공사비가 확정되므로 발주기관이 어느 가격으로 자재를 구입하는가에 따라 해당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좌우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더 큰 문제는 자재 분리발주가 턴키입찰 제도의 도입 취지에 배치된다는 점이다. 발주자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본래 취지에도 역행하게 되며 공사 수행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품질 및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BTL 등 민자사업에서 자재를 분리 입찰하는 것은 더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 본질적으로 민자사업은 정부 예산으로 자재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며 민간이 스스로 조달한 자본으로 자재를 구입하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민간사업자의 자재 구입을 대행하는 꼴이 되며 이는 민간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게 된다. 더욱이 민간사업자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자재를 대리 구매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민자사업의 수익성과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다.

중소기업 보호는 필요하다. 그러나 공공발주자에게 자재 구매를 강제화하는 나라는 없다. 글로벌 스탠더드는 종합건설업자에 자재구매권을 주고 시공결과나 하자에 대해 일관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구나 중소기업청이 시도하고 있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는 과거 폐지했던 단체수의계약이나 관급자재제도를 부활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어 시대착오적 측면도 존재한다. 시대 흐름에 맞는 중소기업 보호정책이 요구된다. <아시아경제, 2010. 5. 31>

최민수(연구위원·mschoi@cerik.re.kr)